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6. 1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5. 2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5. 28.

다. 상정일자: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6. 1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전미경】

가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3. 4. 27.) 및 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(시행 2023. 12. 29.)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명칭 변경
- 조례 목적 변경(안 제1조)

- 자율방범대 등 단체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신설(안 제3조)
- 자율방범대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삭제(기존 제4조, 제6조, 제8조)
- 경비 지원 범위·절차, 지원 중단, 지도·감독 사항 신설
 - 가. 경비 지원 범위 규정(안 제6조)
 - 나. 경비 지원 신청 기간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7조)
 - 다. 경비 지원 중단 사유 규정(안 제8조)
 - 라. 경비 사용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(기존 제14조)

다. 참고사항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입법예고 : 2024. 4. 18. ~ 5. 8.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3. 4. 27.) 및 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(시행 2023. 12. 29.)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(안 제1조)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
 -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
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2조)에는 정의에 관한 사항임.

- 자율방범대: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단체
- 자율방범연합대: 구에 설립된 모든 자율방범대가 연합한 단체
- 자율방범대원: 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

(안 제3조)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

-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함.

(안 제4조)에는 명칭에 관한 사항임.

- 방범대: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○○○자율방범대”.
- 연합대: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”.

(안 제5조)에는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

-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, 청소년 선도, 안전 지원, 교통 및 기초 질서 제도, 경찰 치안업무 협조,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6조)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

-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경비,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, 기타 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함.

(안 제7조)에는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임.

-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비 지원 신청.
- 지원금 정산서는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.

(안 제8조)에는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으로

-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,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,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

실추시킨 경우로 규정함.

(안 제9조)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

- 구청장은 경비 사용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,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지도·점검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(안 제10조)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

-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(안 제11조)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

- 방법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대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(안 제12조)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

-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름.

(부칙)에 관한 사항으로는

- 시행일: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.
- 경과조치: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간주함을 규정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3. 4. 27.) 및 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법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(시행 2023. 12. 29.)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정비·보완을 목적으로 하며, 자율방법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,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

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경비 지원 및 지원 절차, 지원 중단, 지도 및 감독, 교육, 포상 등의 규정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,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- 다만, 경비 지원 및 지원 절차, 지원 중단 사유, 교육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, 형평성 및 행정적 부담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조례의 구체성을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4. 27.] [법률 제18848호, 2022. 4. 26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자율방범대"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"자율방범대원"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"자율방범대장"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 및 구성 등) ① 자율방범대는 읍·면·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구·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, 부대장, 총무 및 대원을 둔다.

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신고)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,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1)·2)·3)·7)·8)·9)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
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(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"자율방범활동"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
3. 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"시·도경찰청장등"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4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제8조(복장·장비 등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

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, 복장,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시·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① 시·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포상)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"연합대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"중앙회등"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·감독)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·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·감독한다.
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금지의무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
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
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② 자율방범대·중앙회등(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)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8조(벌칙)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
제19조(과태료)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